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내

- 법 률 : 제8848호
- 공포일자 : 2008. 1. 17
- 담당부처 : 안전정책팀 (02-509-7238)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설비로서 편리한 교통수단인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여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밀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내

- 법 률 : 제8770호
- 공포일자 : 2007. 12. 21
- 담당부처 : 전기용품안전팀(02-509-7242~7245)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개정이유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25조제5호 등)

- (1) 복사기, 정수기 등 전기용품의 대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여할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 (2) 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1) 안전인증을 받도록 지정된 전기용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제품 등 중에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 (3)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0569호
- 공포일자 : 2008. 1. 29
- 담당부처 : 전력산업팀 (02-2110-5475)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등급 인정을 위한 양성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시공관리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시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현	행
<u>전기공사업법시행령</u>		<u>전기공사업법시행령</u>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내용) ①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내용) ①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 --- 각 호-----.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현행	현행
<p>12. ~ 17.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은 전기공사기술자가 등급의 변경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양성교 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12. ~ 1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 금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 술자</p> <p>② ~ ④ (현행과 같음)</p>